기 고

언론사건 조정의 특성과 바람직한 조정기법

조 윤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6중재부장

Ⅰ 들어가는 말

필자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라고 줄인다)의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지 약 1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법원에서 각종 민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정, 화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론중재위에서 활동하면서 법원에서의 조정보다 언론중재위의 조정 성공률이 훨씬 높음을 알게 되어 사전 분쟁해결기관의 필요성 및 조정의 유용성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최근 민사분쟁이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더욱 실감하고 있다. 또한 판결은 승, 패가 나뉠 수밖에 없어 양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패소한 당사자는 대부분 상소를 하게 되어 분쟁이 종결되지 못한 채 다툼이 계속되니 마음도 개운하지 못하다. 요사이는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도록 화해적 해결이나 조정을 권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언론중재위원이 되면서 더욱 확고해진 것 같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언론중재위에서의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1] 또한 조정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정에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방법들이 활용되는지 등을 필자가 경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앞으로 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려 한다.

1) 언론중재위가 전문적인 사전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요인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다른 사전 조정이나 분쟁해결기관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언론중재위 조정제도의 장점

1. 사전 분쟁해결 제도

법원에도 처음부터 합의를 구하는 조정 신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는 소송 건수에 비하여 극히 적다.[2] 그런데 언론중재위에 대한 조정 신청은 당사자가 합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하는 경우보다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대하는 자세가 훨씬 유연한 면이 있다. 물론 언론중재위의 조정절차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적지 않고 당사자들이 서로 감정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합의를 위하여 양보할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설득의 시작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3]

2. 언론중재위의 구성

언론중재위의 각 중재부는 대개 언론계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고 명망이 있는 원로 언론인, 언론 사건에 관심이 많은 중견 변호사, 언론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을 강의하는 교수, 현직 부장판사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론조정·중재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중재위원들을 보좌하고 있다. 언론분쟁의 실제나 법리에 대하여 정통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언과 권고를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을 이루고 있고, 당사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4]

---

2)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소제기 시의 1/5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비율은 매우 적다.

3) 기본적으로 조정, 화해의 성공 여부는 당사자가 해당 분쟁을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할 생각을 가지는가, 아니면 끝까지 판결을 고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당사자 설득의 많은 부분이 당사자에게 조정, 화해적 해결의 장점을 설명하여 이러한 조정, 화해적 해결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히 심리가 진행된 사건에서는 이미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투여한 이후이므로 판결 결과를 받아보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또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당사자는 양보가 어려워 조정, 화해가 성립되기가 쉽지 않다.

4) 법원 조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들(IT 분야 사건, 건설 분쟁 사건, 의료 분쟁 사건 등)에서 전문가 조정위원들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다.

3. 신속한 피해 회복의 가능

이는 일반 조정에서도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특히 언론조정·중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도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4. 분쟁해결 방법의 다양성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언론사건의 조정에서는 다른 사건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물론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판결보다는 조정, 화해가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채무의 변제기간 유예, 분할 지급 등에서부터 장래의 거래관계 설정까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언론사건에서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반론보도, 기사 삭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인터뷰나 후속보도, 추후보도 등 언론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대안을 활용할 수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양보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Ⅲ 조정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 및 조정기법

1. 사전 준비의 철저

조정에 임할 때는 미리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여 관련 법리를 검토해 보고, 당사자의 주장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조사를 충분히 하여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중재위원 사이에 사전 논의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철저히 사안을 검토하여 사전 논의를 거친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에 임하여 당사자를 자

신 있게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위원들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합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다.

2. 경청과 공감

대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감정을 먼저 해소시켜야 비로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어 합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조정에 임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위원들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충분한 경청을 통해 당사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켜 합의에 이르렀던 실제 사례를 아래에 소개한다.

조 정 사 례

A 언론사는 대리운전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해당 업체의 소속 직원들이 시위하는 현장을 촬영, 보도하였는데, 보도된 화면 속 플래카드에 기재된 업체의 상호 및 업체 대표인 신청인 B의 성명 등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되었다.
이에 신청인 B는 보도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일반인들로부터 악덕기업주로 오인받아 자녀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B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중재위원들이 피해자의 주장에 일부 공감을 표시하며 열심히 경청하자 분노의 감정이 완화되었고, 결국 문제된 사진의 삭제와 언론사의 진지한 사과만으로 충분하다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여 원만히 합의되었다.

아래는 경청을 통해 쌍방의 주장 속에 담긴 공통 분모를 찾아내어 이에 기초하여 당사자를 설득, 원만히 합의에 이른 사례이다.

조 정 사 례

A 언론사는 한 인터넷사이트에 모 가수가 태국 여행 중 게이바에 출입하였다는 글이 게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개인의 성적 취향을 너무 흥미 위주로 다루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한편 B 언론사는 A 언론사의 기사가 해당 사례를 너무 상세히 언급하였고, 관련 사진도 함께 게재하여 오히려 그 기사의 내용과 사진이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A 언론사는 공익적 취지로 작성된 기사를 B 언론사가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중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모두 들어본 결과, A와 B 모두 언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성적취향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재부는 이 점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양 당사자를 설득하여 명백히 사실관계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 일부 정정보도하되, 궁극적으로 양 언론사의 기사를 모두 삭제하는 합의안을 권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진정한 분쟁의 원인과 당사자의 진의 파악

정치인, 고위 공무원, 연예인 등 공적 인물은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어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통하여 명예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하다. 특히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의 및 진정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한편 신청인에 따라서는 일부라도 반드시 정정보도를 해 주기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정밀히 검토하여 일부라도 정정보도를 할 만한 오류가 있다면 언론사를 설득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권유할 수도 있다.

아래는 피해자가 일부라도 정정보도를 반드시 관철하려 한 사안에서 다시 보도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보도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발견되어 언론사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게 한 사례이다.

조 정 사 례

A 언론사는 B모 단체장이 퇴임을 앞두고 공석인 이사를 임명하려고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B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정 심리결과 B모 단체장이 그 이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종의 활동을 한 정황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중재부는 해당 단체의 장은 주주총회에 이사 추천권을 가질 뿐 직접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 주목, '명시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는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권유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최근에는 언론사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와 함께 상징적으로나마 손해배상을 반드시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언론사에게는 국민의 권리의식 증진으로 손해배상을 포기하지 않는 당사자가 늘고 있고, 법원에서도 손해배상액수가 고액화하고 있는 사정 등 바뀐 언론 분쟁환경을 설명하고, 신청인에게는 반드시 받고자 하는 상징적인 손해배상액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설득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고 있다.

한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언론사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이 목적이거나 정정보도 등과 함께 부수적으로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중재부는 언론사가 조정석상에서 사과를 표명하는 것으로 하되,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는 내용을 문안으로 작성하여 합의조항에 삽입하고 이를 언론기관이 낭독하는 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단순한 사과 표명보다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아 합의를 촉진하는 데 유용하였다.

4. 역할 분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중재위원들 간의 역할 분담도 매우 중요하다.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먼저 사전 논의하여 대략의 조정안을 마련한 후, 이러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설득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득의 수단은 각 사안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위원들 간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 대체로 '언론기관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역할',[5]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이러한 사례에서 소송으로 이행할 경우 언론기관에게 부과될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 등을 설명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으나, 조금만 양보하면,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설명하며 피해자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역할' 등을 적절히 분배하여 양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를 지적한 후에는 언론기관이 나름대로 사실보도를 위해 기울인 노력, 분쟁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적절히 공감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5. 분리, 교차 신문의 활용

우리 중재부는 당사자를 분리하여 교대로 그 진술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파악하고, 또 상대방이 있는 장소에서 말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어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의할 것은 양 당사자에게 거의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6. 상호성의 법칙의 활용[6)]

조정은 대체로 상호간의 양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언론 조정에서 신청인은 대개 허위보도로 인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에 대해 언론기관은 처음에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재부의 논의 결과 일부는 정정보도를, 일부는 반론보도를 하는 것이 적정하나,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양 당사자를 분리하여 설득해 본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일부는 정정보도 대신에 반론보도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고, 언론기관은 반론보도는 가능하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은 곤란하다고 한다고 하자. 이때 중재부는 다시 피해자를 불러 언론기관이 반론보도는 가능한 것으로 양보했는데, 중재부가 일부라도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언론기관의 양보를 받아볼 테니 피해자도 손해배상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다. 이때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언론기관에게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양보했으니 일부에 대하여는 반론보도를 하는 대신에 정정보도를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여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성의 법칙은 특히 손해배상 액수를 구체적으로 조정할 때 효과적이다.

7. 권위의 법칙의 활용(중재위원의 직업이나 경력 등의 언급)

정당한 권위에 따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조정 시작

6) 이하의 상호성의 법칙, 권위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의 활용 등은 Cialdini, R. B., 2002, 『설득의 심리학』, 이현우 역(파주: 21세기북스)에 나오는 설득의 법칙들을 조정 사례에 대입시켜 본 것이다.

전이나, 진행 중 중재위원의 직업이나 경력 등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다. 당사자들이 중재위원들의 지식이나 경력 등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조정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그만큼 설득도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 정 사 례

A 언론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들이 과실 비율의 산정 기준을 잘 몰라 보험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교통사고를 경험한 바 있는 신청인 B의 인터뷰를 함께 내보냈다.
이에 신청인 B는 인터뷰 당시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초상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A 언론사는 B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하였다.
양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경청한 후, 방송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중재위원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신청인 B의 모자이크 처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이를 바탕으로 A 언론사를 설득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사례와 같이 주로 언론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중재위원들이 언론사들을 설득하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인 출신의 중재위원들은 언론인 편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의구심을 갖던 피해자들이 중재부의 조정안을 신뢰하게 되어 합의에 이르기 쉽다.

8. 사회적 증거의 법칙의 활용(유사한 사례나 판례의 설명)

해당 사안과 유사한 조정 사례나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건을 여러 언론사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하였을 때, 제일 먼저 이를 보도한 언론사나 규모가 큰 언론사와 합의에 이르게 되면, 후속보도를 한 언론사나 규모가 작은 언론사의 경우는 이를 존중하여 대개 같은 내용의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러한 법칙을 응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7)]

7) 물론 그 보도의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별도로 발견되거나 또는 감경요소가 발견될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책임을 가중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경하여 각 합의하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다른 언론사와의 합의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조 정 사 례

A 언론사는 모 단체의 B 회장이 회의석상에서 막말을 하고, 공식 연수를 '여행'이라고 발언하는 등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수 차례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B 회장은 당시 발언의 의미는 보도의 취지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재부에서는 보도상 표현의 수위가 지나쳐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하고, 민사상으로도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A 언론사에 설명해 주고, 반면 신청인에게는 일부 배상액을 양보할 것을 권유하였다. 양 당사자는 신청인의 입장에 대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9. 조정제도의 취지와 한계 설명

한편 일정한 액수 이상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고집을 꺾지 않는 당사자나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협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조정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언론중재위에서의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언론중재위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처럼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신 빠른 권리 구제가 가능하며, 여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면 권리 구제를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설득하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Ⅳ 향후 조정제도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1. 사전 분쟁해결기관의 확대

우리 국민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고 양보를 패배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조정이나 화해에 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 사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중재기관이 발달한 편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분쟁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고, 판결이 반드시 적정한 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소 제기 이전에 사전 분쟁해결기관을 통한 조정이나 화해적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앞으로 이러한 사전 분쟁해결제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8] 이런 점에서 언론중재위의 조정, 중재제도는 사전 분쟁해결제도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조정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교육의 필요성

한편 이러한 사전 분쟁해결로서의 조정, 화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정, 화해, 타협의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ADR의 유용성, 대화와 타협의 기술 등을 교육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조정 능력과 자격을 갖춘 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중재위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비 법조인, 언론기관 뿐만 아니라, 공무원, 초·중고 교사, 기관·기업의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9] 그리고 최근에는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라는 책자의 발간을 통하여 조정기법이나 주요 각국에서의 조정의 역사나 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필자도 이를 통하여 조정제도나 조정기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8) 최근 법원에서도 법원에 제소된 사건들을 일단 조정센터 등 조기 조정에 회부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9) 또한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는 '또래조정' 제도도 지원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V 맺음말

언론중재위원으로서 1년을 지내며 그동안 법원에서의 경험과 언론중재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두서없이 조정에 대한 평소 생각과 조정기법 등에 관하여 써 보았다. 요사이 점점 더 드는 생각은 '최악의 화해도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처럼 민사사건에서는 화해나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조정이나 화해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사전 분쟁해결기관들을 통한 분쟁의 조기 해결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